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용규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의용소방대원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요양, 장애,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 삭제(안 별지 제13호)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전담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1일 8시간 초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5. 검토내용

○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서식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인감증명서’는 2024년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제출 항목으로 분류되어, 이 항목을 정비하는 것은 도민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평가됨.

- 현행 조례 제19조는 의용소방대원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소집수당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전담 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예외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함.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0. 3. 13.>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따라서,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맞추어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5. 3. 6. ~ ‘25. 3.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법무혁신담당관에서는 개정안 제13조제3항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원칙을 명시한 후 단서 조항을 개정안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조례 제19조제3항에서도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함.

또한, 소집수당 지급 근거는 해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 시·도의 관련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에 대해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원의 권리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특히, 소집수당 지급 기준의 확대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